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안도걸 · 이병진
신정훈 · 이연희 · 조인철
복기왕 · 이상식 · 송재봉
위성곤 · 강선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

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
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제1항).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을 “다음 각 호의 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

가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1항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
나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
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
라.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2.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「고용보험법」 제69조의3
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
 - 가. 부동산 임대업
 - 나.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자영업자에 대한 특례)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주로서 <u>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요건을</u> 갖춘 자영업 자(이하 “자영업자”라 한다)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49조의2(자영업자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 <u>의 요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</u> <u>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</u> <u>에 해당할 것</u> 가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1 항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 나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5 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 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로서 「영 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 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~ ⑫ (생 략)	<u>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</u> <u>영위하는 경우</u> <u>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</u> <u>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</u> <u>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</u> <u>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</u> <u>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</u> <u>라.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</u> <u>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사업</u> <u>2.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</u> <u>년 이내에 「고용보험법」 제</u> <u>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</u> <u>받은 사실이 없을 것</u> <u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</u> <u>니할 것</u> <u>가. 부동산 임대업</u> <u>나.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</u> <u>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</u> <u>소비 생산활동</u> ② ~ ⑫ (현행과 같음)
--	--